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4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임의자 · 이인선 · 강승규
김기현 · 박성훈 · 김승수
신성범 · 조지연 · 임종득
최은석 · 배준영 · 서일준
신동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전통시장사용분”을 각각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50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6호다목 중 “큰 경우”를 “크고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

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times$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3. (생략)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50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
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
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
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
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
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4. -----

-----전
통시장등사용분-----

-----전통시
장등사용분-----

5. -----
-----전통시장등사용분-----

6. -----
---. -----

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1)·2) (생략)

<신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크고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
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
나 같은 경우-----
--

1)·2) (현행과 같음)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문화체육사
용분) ×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

7. (생략) ③ ~ ⑪ (생략)	$\frac{\text{의 } 4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문화체육사용분} - \text{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text{분의 } 50}{2}$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frac{\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15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times 100\text{분의 } 30 + \text{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text{분의 } 4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직불카드등사용분} - \text{대중교통이용분}) \times 100\text{분의 } 50}{2}$ 7.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	---